

국회의원(김태규) 정계안

의안 번호	21736
----------	-------

요구연월일 : 2026. 10. 1.

요 구 자 : 천준호 · 강득구 · 강준현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권향엽 · 김교홍 · 김기표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김민석 · 김병주 · 김성범

김성환 · 김성희 · 김승원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김우영 · 김원이 · 김 윤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김 현 · 김현정 · 남인순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중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박용갑 · 박 정 · 박정현

박주민 · 박지원 · 朴芝源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균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현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이정문 · 이정현 · 이주희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전용기 · 전은수 · 전진숙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조승래 · 조인철 · 주철현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채현일 · 최기상 · 최민희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황정아 · 황희의원
(161인)

주 문

국회의원(김태규)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의무가 있음.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규는 2026년 9월 30일 유튜브 채널인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은 내란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닙니다”, “(법적 역사적 판단)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 “(전두환 내란수괴사형선고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등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하는 망언과 망발을 서슴지 않음.

다. 이는 내란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단죄를 왜곡하고 비트는 ‘역사 부정’을 넘어 국가를 전복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독재자를 비호하고, 윤석열과 전두환을 미화하기 위한 ‘내란 옹호’이자, ‘헌정질서 부정’에 다를 바 없음.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쟁취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작태와 무도한 인식을 드러낸 것임.

라. 윤석열의 내란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고, 2026년 2월 19일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수괴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마.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행위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법적·역사적 사건임.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한 점과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함. 이어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법적·역사적 성격을 명백히 확립하였음. 또한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바. 3심을 거쳐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자, 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사법부 무력화에 다를 바 없음. 이러한 ‘사법 부정’과 ‘판결 불복’은 결국 역사 부정과 왜곡 시도에 그치지 않고 ‘재판 뒤집기’를 통해 내란세력의 부활을 감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임.

사. 이처럼 국회의원 김태규는 국민 통합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하였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임.

아. 이에 국회의원 김태규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46조를 위반하였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회법」 제24조,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